

「교사교육연구」 논문집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논문집 투고규정 제5조(게재결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 등 임원투고 논문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조교수급 이상 해당 전공자로 위촉한다.
4.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의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논문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투고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영역의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중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익명화된 원고를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의뢰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영문 초록의 명료성과 적절성
2. 논문으로서 체제와 구성의 적합성
3.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의 명료성
4. 연구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
5.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6. 연구 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 효과)
7. 국내외 선행 연구의 반영 정도
8. 요약의 적합성
9. 「교사교육연구」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5조(논문심사 결과 판정)

1. 논문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한다. 구체적인 심사결과 판정은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종합판정 결과에 따른 후속 진행은 다음에 따른다.
 - 가.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또한,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나.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제의』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 통보 후 2개월이 경과해도 수정논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 재심사』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 재심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심 및 재심 결과를 종합하여 총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게재가/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하며, 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1명 이하의 심사위원만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3. 기타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순서는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최종 수정 논문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5. 학술대회 발표 논문도 동일한 심사절차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논문집 투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제6조(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7조(이의신청) 투고자는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결과 판정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2)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4)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5)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6)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7)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8)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9)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